[서식 예]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
 - 가. ○○시 ○○구 지역에서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 세탁소영업을 할 수 없다. 나.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-○○ 소재 점포에서 경영하는 '◎◎세탁소'의 영 업을 폐지하라.
- 2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4.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영하던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-○○ 소재 '◎◎세탁소'를 그 상호 및 그 업소에 관한 모든 영업시설과 함께 금 ○○○만원에 양수하여 세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세탁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세탁소를 양도한 뒤에 세탁소는 운영하지 않고 옷가게 또는 분식점을 운영한다고 약속을 하고

서도 위 세탁소에서 약 50m 떨어진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-○○ 소개 생물에서 20○○. ○. ○○.부터 '⑥⑥세탁소'라는 상호로 원고와 같은 종류의 탁업을 해오고 있으며, 피고가 '⑥⑥세탁소'를 운영할 때 확보해둔 고객의 세탁을 의뢰받아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규정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그만두라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으나,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세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.

- 3. 그렇다면 영업양수인이 가지는 양수한 영업에 대한 종래의 고객이나 거래처 기타 사실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4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'◎◎세탁소'를 원고에게 양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10년간 ○○시에서 세탁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,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할 것입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점포양도계약서

1.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

1. 갑 제3호증의 1. 2 각 통고서

1.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

 20○○.
 ○.
 ○.

 위 원고
 ○○○
 (서명 또는 날인)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『소멸시효일람표. [™]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・상법 제41조(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)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・광역시・시・군과 인접 특별시・광역시・시・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.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・광역시・시・군과 인접 특별시・시・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.		

※ (1) 관 할

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 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